제안서 작성, 제출 등 주요절차 및 주의사항

1. 사업의 수행 범위

- 탑재체 개발기관으로서의 국내 우주기술 및 우주과학, 관측 분야 연구기반 확보
- 탑재체 비행모델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 비행모델 조립 전('20.03.31)까지 주관연구기관에 납품을 원칙으로 함
- 사업관리
 - ·필요시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체 시제품의 품질 관리 및 기술 교환
 - ·국산화 원자재 및 비국산화 부품 자체 조달(ITAR FREE 원칙으로 함)
- 기술개발
 - ·탑재체 개발 주관(설계, 제작, 조립, 시험)
 - ·탑재체 데이터 수신처리시스템 개발주관(H/W, S/W)
 - · 탑재체-본체-지상국 간의 접속 업무 지원
 - ·탑재체 제품보증(Product Assurance) 수행
 - · ETB(Engineering Test Bed) 조립 및 시험 지원(S/W시험 포함)
 - ·위성 시스템 조립 및 시험 지원(S/W 시험 포함)
 - · 초기 운영 지원 및 탑재체 검·보정 수행
 - · 탑재체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사용자 그룹 운영 계획

2. 개발 및 납품품목(안)

구분	부품	EQM	FM	ETB용 IF 시뮬레이터	전기적 지원장비	수신데이터 처리시스템
과학 탑재체	탑재체 시스템 (HW, SW)	1set	1set	1set	1set	1set

[※] 지상모델을 이미 제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개발모델이 필요하지 않음.

3. 사업 신청 요건

가. 신청대상기관

- (1)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(2)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(3)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
- (4)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- (5)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- (6) 국·공립연구기관
- (7)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(8) 「나노기술개발 촉진법」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
- (9)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(10)「의료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「의료법인」중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- (11) 그 밖에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
나. 사업책임자 자격요건

- (1) 대학(교) 교원(전임, 비전임), 국공립·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
- (2) 사업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

다. 기타사항은 아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적용

- (1)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- (2) 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
- (3) 「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」
- (4)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」등

4. 응모 방법

- 가. 별첨의 「개발제안서」및「1차년도 사업계획서」제출 (상세한 접수방법은 "V.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" 참조)
- 나. 접수 후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 시 보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5. 기타 사항

가. 일반 사항

- (1) "V.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"을 숙지한 후 작성할 것
- (2)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할 것
- (3) 학/연/산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권장함
- (4) 참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사업관리체계의 구성을 상세히 작성 하여 첨부할 것
- (5) 탑재체 개발기관은 설계, 원자재/부품 구매, 제작 및 조립 그리고 시험에 대한 예산 사용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
- (6) 탑재체 개발기관은 탑재체 개발의 실패에 따른 Back-up 계획을 작성하여 첨부할 것
- (7) 발사 후 탑재체 데이터 처리 및 검·보정 수행방안 그리고 활용 목적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

나. 비용에 관한 사항

- (1) 전체적인 사항
 - 예산조달은 정부의 투자분을 원칙으로 하나, 개발기관의 분담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
- (2) 세부적인 사항
 - 개발에 소요되는 부품 구매비용 전체
 - 개발에 필요한 운반기구, 시험장비, 측정기기 등 제반 도입비
 - 설계, 제작, 조립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

다. 탑재체 개발 수행방안

- (1) 소요되는 원자재 및 부품들은 개발기관이 직접 구매함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 시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구매도 가능
- (2) 탑재체 개발기관은 개발될 탑재체의 제품보증에 대한 수행방안을 기술 해야 함

라. 주관연구기관과 탑재체 개발기관 및 참여기관 간의 연결 업무

- (1)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탑재체 개발기관은 위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에 참여할 수 있음
- (2) 탑재체 개발기관은 해당 탑재체의 설계, 제작, 조립 및 시험을 주관함
- (3) 탑재체 개발기관은 탑재체와 관련된 위성의 총 조립, 기능 및 환경 시험 에 적극 지워하여함
- (4)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이 보유한 조립/시험시설을 사용(재료 및 실비성 경비는 개발기관에서 부담).
- (5) 탑재체 개발기관은 발사 준비과정 및 탑재 데이터 수신 및 관제소 초기 운영을 공동수행하며, 발사 후 필요 시 탑재체 운용과 관련하여 지원 하여야 함
- (6) 주관연구기관의 사업관리 및 업무보고 등 관리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(7) 사업수행에 따른 각 개발기관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중재 또는 조정에 따름
- (8) 전 개발기간 중에 사업수행 상 긴급사항의 발생 시에는 각 개발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요청 또는 지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함

6. 평가방안

평가항목	주요 평가내용		
개발목표의 우수성 및 창의성 (30%)	·개발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·과학임무의 창의성 ·해당기술 개발의 필요성 ·해당기술의 기술적 파급효과 정도 등		
탑재체 활용계획의 우수성 (30%)	 ·데이터의 활용계획의 구체성과 적합성 ·탑재체 결과물의 향후 실용화 가능성 등 ·연구개발에 따른 논문/지적재산권 등의 도출 가능성 등 		
개발성공가능성 (20%)	 일정, 예산 등 수행방안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전기적/기계적 접속을 고려한 설계방향의 적정성 탑재체/본체/지상국간의 적합성을 고려한 설계 가능성 등 		
연구역량의 우수성 (20%)	・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수행 실적 ・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 수행 환경의 적정성 ・해당 분야 기본기술의 확보성 ・해당분야의 개발경험 유무 등		

7. 사업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- 가. 하나의 참여희망 개발기관만이 신청하더라도 평가기준 및 대상에 미달 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
- 나. 제안요구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"특정연구과제 규정"에 따름
- 다. 선정된 탑재체 개발기관은 계약 후 3개월 내에 PAPP(제품보증프로그램 계획)를 별도 문서로 작성 및 제출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
 - 탑재체 제품보증 방안 및 관리
 - 하드웨어/소프트웨어 형상관리
 - 하드웨어/소프트웨어 품질보증
 - 하드웨어/소프트웨어 오염관리
 - 위성 본체/지상국과의 하드웨어/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계획
 - 탑재체 제작조립 및 시험(AI&T) 품질보증
 - EEE Parts(전기전자소자) Control 방안
 - 자재 및 공정관리 계획

라. 사업제안서 작성 요령

- 사업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정량적으로 도표화하여 작성할 것
- 사업제안서 요약서는 단면으로 A4용지 10쪽 이내로 작성할 것
- 5쪽 이상의 첨부자료를 포함할 경우 그 요약서를 작성할 것

마. 문의요령

- 문의기간 : 2017. 04. 24 ~ 2017. 05. 10

- 문의방법 : 방문, 전화, 메일 등

• 담당자 : 신현진

· 전화번호 : (042) 350-8628

• 전자주소 : guswls@kaist.ac.kr

바. 사업제안서 제출

- 제출기한 : 2017. 07. 14(금), 오후 6:00까지
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(등기우편으로 송부)

- 주의사항

- . 상기 제출기한 이후 신청되는 제안서는 접수치 않음
- . 내용이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사업제안서는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임박한 접수는 주의를 요함
- . 우편접수의 경우 2017. 07. 14(금)일자 소인이 찍힌 도착분에 한함
- . FAX에 의한 사업제안서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
- . 상기의 추진 일정은 정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. 차세대소형위성2호 개발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1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양식은 (별첨 4)에 첨부함

사.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

1) 접수문의

- 주소 : 우편번호 305-701)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, KAIST 인공위성연구소 행정실, 김단희

- 전화번호 : (042) 350-8613

- 팩스번호 : (042) 861-0064

- 전자주소 : ismha@kaist.ac.kr

2) 사업규정 및 계약문의

- 주소 : KAIST 인공위성연구소, 이승훈

- 전화번호 : (042) 350-8624

- 팩스번호 : (042) 861-0064

- 전자주소 : drumlee@kaist.ac.kr

마. 제출부수

- 사업제안서 및 요약서 각 15부 (CD 1매 별도)
- 1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5부 (CD 1매 별도)
- ※ 사업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와 관련 제출된 모든 서류(CD 1매 별도)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